

##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제정	1999. 9. 14.	훈령	제366호			
개정	2000. 10. 27.	훈령	제399호			
일부개정	2011. 2. 8.	훈령	제560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1. 12. 29.	훈령	제575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1. 17.	훈령	제60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12. 24.	훈령	제627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7. 6. 15.	훈령	제670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10. 24.	훈령	제68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9. 10. 28.	훈령	제703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0. 1. 31.	훈령	제706호(안양시	훈령 중 제명	떠어쓰기와 약칭	일괄 정비 규정,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7. 10.	훈령	제712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2. 1. 10.	훈령	제731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본청의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과·소의 행정을 종합지도·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5.>

제2조(담당) ① 시 본청 각 실·국장의 지도담당 과·소 및 결재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15.>

② 시본청 각 실·국장은 과·소의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지도책임을 진다. <개정 2017. 6. 15.>

제3조(지도·감독) 시 본청의 각 실·국장은 담당과·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1. 전직원의 근무상황, 지휘감독 및 근무평정확인
2. 각종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
3.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제4조(결재 및 보고) 각 과·소장 및 관련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1. 과·소장 전결사항 이외의 중요사항
2. 과·소장 전결사항중 중요사항
3. 기타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협조) 4급 사업소장(보건소 포함)의 경우 본청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시 본청 실·국장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15.>

제6조(기타사항)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27. 훈령 제39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훈령 제56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과·소의 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및 ③ 생략

별지 생략

부칙 <2011. 12. 29. 훈령 제575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과·소의 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별지 생략

부칙 <2014. 1. 17. 훈령 제60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과·소의 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별지 생략

부칙 <2014. 12. 24. 훈령 제627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붙임1)와 같이 한다.

붙임1 생략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7. 6. 15. 훈령 제670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⑬ 생략

부칙 <2018. 10. 24. 훈령 제68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과·소의 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과·소의 업무지도규정 별표 <2018. 10. 24. 훈령 제689호>  
참조]

② 생략

부칙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②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과·소의업무지도규정 별표 <2019. 10. 28. 훈령 제703호> 참조]

③ 생략

부칙 <2020. 1. 31. 훈령 제706호, 안양시 훈령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일괄정비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훈령 제712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별표 <2020. 7. 6 훈령 제712호> 참조]

③ 생략

부칙 <2022. 1. 10. 훈령 제731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별표 <2022. 1. 10. 훈령 제731호> 참  
조]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2. 12. 30. 훈령 제739호,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안양시 과·소의 업무 지도 규정 별표 <2022. 12. 30. 훈령 제739

호> 참조]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22. 12. 30.>

**본청 각 실·국장의 과·소 지도담당 및 결재(제2조 관련)**

1. 본청 각 국장의 과·소 지도담당 및 결재

구 분	지도담당 및 결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기획경제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과</li> <li>* 예산법무과</li> <li>* 고용노동과</li> <li>* 기업경제과</li> <li>* 회계과</li> <li>* 세정과</li> <li>* 징수과</li> </ul>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안전행정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무과</li> <li>* 자치행정과</li> <li>* 안전정책과</li> <li>* 체육과</li> <li>* 시민봉사과</li> <li>* 정보통신과</li> </ul>		
복지문화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정책과</li> <li>* 문화관광과</li> <li>* 노인복지과</li> <li>* 장애인복지과</li> <li>* 여성가족과</li> <li>* 교육청소년과</li> <li>* 위생정책과</li> </ul>		
도시주택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과</li> <li>* 신성장전략과</li> <li>* 도시재생과</li> <li>* 도시정비과</li> <li>* 건축과</li> <li>* 주택과</li> <li>* 시설공사와</li> </ul>		
도로교통환경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과</li> <li>* 철도교통과</li> <li>* 스마트도시정보과</li> <li>* 대중교통과</li> <li>* 환경정책과</li> <li>* 기후대기과</li> <li>* 자원순환과</li> </ul>		

2. 본청 각 국장의 4급 사업소의 결재(업무의 협조 시)

구 분	직속기관·사업소	비 고
복지문화국장	* 만안구보건소 * 동안구보건소 * 평생학습원	
도시주택국장	*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교통환경국장	* 하천녹지사업소	

3. 결재 및 업무협조

가. 보건소장의 경우

담 당	과 장	보건소장	부 시 장	시 장
협 조	실·국장			

나. 4급 사업소장의 경우

담 당	과 장	사업소장	부 시 장	시 장
협 조	실·국장			

다. 5급 사업소장의 경우

담 당	사업소장	실·국 장	부 시 장	시 장
협 조				